

## 대법원판례 해설

### - “ESSIE” 서비스표 사건 -

#### 1. 사건의 표시

2012후1071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3.11.28. 선고

#### 2. 판결이유의 요지

(1) 등록취소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라 함은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운영하는 암코에스의 네일숍 매장 내부 진열대 상단에 'essie' 표장이 표시된 점 및 2010년 9월 이전에 발간된 잡지에 위 네일숍 광고에도 그런 사진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통상 사용권자인 암코에스에 의하여 그 지정 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암코에스의 네일숍 매장 입구에 'C Nail'이라는 '미용업' 등의 출처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 표장은 매장 내부의 네일폴리쉬 제품이 진열된 진열대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대문자로만 구성된 "ESSIE"라는 표장인데 반하여 이 사건 사용 표장은 소문자로만 구성된 'essie'라는 표장으로 'essie' 네일케어 제품에 사용된 표장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네일숍 매장 내부에 표시된 이 사건 사용표장은 일반 거래통념상 암코에스가 피고 등이 수입·판매하는 'essie' 제품을 광고하거나 위 네일숍에서 'essie'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3. 판례 해설

(1) 위 대법원 판결은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비스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해야 하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가 비록 위와 같은 사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네일숍 매장 내부에 수입, 판매하는 'essie' 제품을 광고하거나 위 네일숍에서 'essie'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 자기의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다만, 등록서비스표 "ESSIS"와 사용 서비스표 "essis" 사이에 영문자 대소문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점을 취소사유로 삼지는 않았습니).

(3) 특히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시에는 그 지정서비스업은 유형적인 상품과 달리 무형의 재화이므로 직접 서비스업에 표시하거나 전전 유통할 수 없고 오직 광고적 사용행위에만 한정되므로 그 지정 서비스업과의 관계, 사용태양, 사용방법 등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등록서비스표의 불사용의 유형에는 전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 외 사용하였더라도 부정사용(등록서비스와 사용서비스표 및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서비스업과의 대비에서 동일성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타 불법적 사용(예컨대, 무허가 사용행위 등)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